

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열람·공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연장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(☎749-865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,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·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23. 6. 12.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1.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

○ 대상지역

- 옥련동·동춘동 일원 (2,280,698㎡ / 689,911坪 / 408필지)
- 옥련동 246번지 (26,345㎡ / 7,969坪 / 1필지)

○ 제한 연장사유

- 송도유원지 일원 「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」 추진
- 옥련동 246번지 「도시관리계획 기본구상 및 관리방안」 수립 추진

○ 기 간 : 제한 기간 연장 고시일로부터 2년 (2023. 7. 1일부터 시행)

○ 제한행위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

-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, 토지분할, 적치행위(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) 등

○ 예외사항

- 기존 건축물의 증축·개축·용도변경, 기존 건축물의 증축·개축·용도변경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
(단, 기존 건축물이 있는 동일부지 안에서의 행위에 한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)
- 실시계획(변경) 인가, 건축(변경)허가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인·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
- 건축허가(신고)사항의 변경 중 「건축법시행령」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 시 일괄처리 사항
- 화재,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
-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3항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53조에서 정하는 행위
- 그 밖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인정된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, 토지의 형질 변경

2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■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 간

■ 의견제출 :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열람장소 :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(☎749-8652)

4. 관계도서 및 도면 : 게재 생략 (열람장소에 비치)